# 2021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**사업비 산정기준**

문의처				
이메일	gcreator@gcon.or.kr			
전화	032-623-8055			

### 지원금 사용 및 증빙에 관한 일반 지침

#### □ 지원금 사용 간 부가가치세/관세 처리 기준

- 본 사업은 사후 환급 및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/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 으로 지원금을 계획/사용/정산합니다.
  - ※ 사후 환급 및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건의 경우 지원금 사용내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자 사업자 분류별 부가가치세/관세 인정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사업자 분류	지원금 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 인정 여부			
일반과세 사업자	불인정			
간이과세 사업자				
면세사업자	인 정			

#### □ 지원금 사용 및 증빙에 관한 지침

- 지원자는 당해 제작지원금 관리용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 사업비 전용계좌를 신규개설하고 해당계좌 연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- ※ 단, 계좌 신규개설이 어려운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보유 계좌도 활용 가능합니다.
- 지원금 지급 시점 기준 해당계좌의 잔액은 반드시 0원이어야 합니다.
- 해당계좌는 지원사업 관련 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, 기타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경우 회계감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비 전용계좌 연계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- ※ 부득이 현금사용 시 진흥원과 사전조율 거쳐야 하며,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.
  - ※ 임의 현금사용 또는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은 협약체결 시 최종 제출한 [사업수행계획서]에 근거하여 사용해야 하며, 계획변경이 필요할 시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 진흥원 승인을 득한 후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. 변경 승인 전 임의사용 내역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제작기간 내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며, 이후 사용분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지출은 콘텐츠 제작 및 채널운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사업비 산정 기준 상 명시된 증빙 자료가 완전히 구비된 경우에만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.
- 지원자는 제작기간 종료 후 협약서에 명시된 기한 이내 지원금 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회계감사로 확정된 잔액, 불인정금액, 이자 등은 안내에 따라 반납합니다.
- 지원금 사용 관련 사업자별 원천징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## 지출항목별 세부내용

지출항목		세부내용	결제방법	증빙자료
직접비 (80% 이내)	기자재 및 시설 임차	- 콘텐츠 제작 관련 기자재 및 시설 <u>임차</u> 예) 스튜디오, 카메라, 드론, PC 등 * 자산성 물품 취득(장비 구입) 불가	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	<ol> <li>작격증빙</li> <li>* 카드매출전표/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중 하나</li> <li>계약서 또는 견적서(세부내역 명시)</li> </ol>
	재료비	- 콘텐츠 제작 관련 <u>소모성</u> 재료 구입 예) 먹방 음식, 리뷰 제품, 의상, 기타 소품 * 개별제품/서비스 단가 <u>20만원 이하</u> 만 인정 * 장기간 사용가능한 <u>자산성 물품은</u> 불인정될 수 있음		<ol> <li>작격증빙</li> <li>* 카드매출전표/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중 하나</li> <li>계약서 또는 견적서(세부내역 명시)</li> <li>콘텐츠 연관성 증빙</li> <li>* 제공된 문서양식 참고</li> </ol>
	여비	- 콘텐츠 제작 관련 출장/여행 예) 숙박, 항공, 기차, 택시, 차량 렌트 * 위 5가지 외 <u>단순아동 교통비, 식비, 유류비 불</u> 인정		<ol> <li>4 격증 방</li> <li>* 카드매출건표/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중 하나</li> <li>촬영일지 또는 출장신청/보고서</li> <li>* 일시, 목적, 장소, 비용, 인원 포함</li> <li>* 1일 이내 일정: 촬영일지 작성</li> <li>* 1박 이상 일정: 출장신청/보고서 작성</li> </ol>
	정보 활동비	- 콘텐츠 분야 행사참여 예) 학회·세미나·워크숍 등 -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라이센스 취득 예) 편집 S/W, 음원, 이미지 소스 등 - 콘텐츠 분야 참고서적 구입		<ol> <li>4 격격증빙</li> <li>* 카드매출전표/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중 하나</li> <li>항목별 추가증빙</li> <li>* 행사참여: 행사참가보고서, 팜플렛 등</li> <li>* 라이센스: 세부내역 포함된 인보이스</li> <li>* 참고서적: 구입 도서 리스트 및 사진</li> </ol>
	회의비	- 콘텐츠 제작 관련 회의 진행		<ol> <li>작격증빙</li> <li>* 카드매출전표/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중 하나</li> <li>회의록</li> <li>참가자 전원 성명/소속/날인 필수</li> <li>* 회의내용 세부기록 및 현장사진 필수</li> </ol>
	일반 수용비	<ul> <li>소규모 발생 경비</li> <li>예) 인쇄, 우편발송, 사무용품 등</li> <li>※ 개별제품/서비스 단가 5만원 이하만 인정</li> </ul>		<ol> <li>작격증빙</li> <li>카드매출전표/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중 하나</li> <li>계약서 또는 견적서(세부내역 명시)</li> </ol>
홍보비 (60% 이내)		- 콘텐츠 및 채널홍보를 위한 광고 집행예)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- 콘텐츠 및 채널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등예) 엽서 제작, 구독자 이벤트 경품 구입 등※개별제품/서비스 단가 20만원 여하만 인정	카드결제 또는 계 <b></b> 라이체	<ol> <li>4격증빙</li> <li>카드매출전표/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중 하나</li> <li>계약서 또는 견적서(세부내역 명시)</li> <li>결과보고서(내용 구체적 명시)</li> <li>페이스북/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내 인보이스 제출</li> <li>이벤트 경품 등의 경우 발송내역 상세히 제출</li> </ol>
위탁사업비 (80% 이내)		- <u>사업자가 아닌 개인</u> 에게 과제 위탁 예) 촬영, 편집, 출연, 번역, 전문가 자문 등	계좌이체	<ol> <li>계좌이체 증빙</li> <li>계약서(업무 구체적 명시)</li> <li>결과보고서(업무 구체적 명시)</li> <li>* 단순보조(엑스트라 등)의 경우 생략 가능</li> <li>원천징수영수증</li> <li>* 원천징수 납부액 지원금 집행내역에 포함</li> </ol>
		- <u>개인이 아닌 사업자</u> 에게 과제 위탁 예) 촬영, 편집, 출연, 번역, 전문가 자문 등	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	<ol> <li>작격증빙</li> <li>* 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중</li> <li>계약서(업무 구체적 명시)</li> <li>결과보고서(업무 구체적 명시)</li> </ol>